

# 증치세 공제불가 비과세거래 지침 발표, 두 리스트로 매입세액 공제 로직 정리

2026.09

Issue 10

## 개요

2026년 8월 27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비과세거래 등 증치세 관련 사항 명확화에 대한 공고》<sup>1</sup>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 25호, 이하 “25호 공고”라 함)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sup>2</sup> (이하 “《증치세법》”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sup>3</sup> (이하 “《실시조례》”라 함)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실무상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포지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의 형식을 통해 비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자산 재편 시 금융상품 매입가액의 확정, 증치세 혜택 포기 등 방면에 대해서 추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25호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발생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 효력을 갖습니다.

## 상세 내용

### 一、공제불가 비과세거래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납세인이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입하여 하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과세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증치세법 제 3 조 내지 제 5 조(PwC 주: 경내에서 과세거래와 간주 과세거래 발생) 이외의 경영 활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증치세법 제 6 조에서 규정된 경우(PwC 주: 과세거래에 속하지 않은 4 가지 유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공제불가 비과세거래는 “증치세 비과세 + 경영활동 해당 + 경제적 이익 취득 + 증치세법 제 6 조에 규정한 경우에 비해당”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에 대한 판단에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25 호 공고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공제불가 비과세거래 판단에 대해 실무 지침을 제공했으나, 유의해야 할 것은 리스트 내용이 완전한 열거가 아니라는 점이며, 열거된 경우가 모든 업무 시나리오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인이 25 호 공고의 판정 로직을 참조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모호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관할 세무기관과 소통하고 집행방향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과세거래의 공제불가 금액을 확정할 때, 통상적으로 산식을 활용하여 ‘구분할 수 없는 공제불가 매입세액’ 또는 ‘장기자산 혼합 사용 기간 중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sup>4</sup>(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13 호)에 따르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당기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공제불가 매입세액

= 당기 구분할 수 없는 전체 매입세액

$$\times \frac{\left( \begin{array}{c} \text{당기 간이과세방법} \\ \text{적용 항목 판매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당기 증치세 면제} \\ \text{항목 판매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당기 공제불가} \\ \text{비과세 거래 수익} \end{array} \right)}{\text{당기 전체 판매액} + \text{당기 전체 비과세 거래 수익}}$$

## (一) 포지티브 리스트: 6 가지 유형의 공제가능 비과세거래

25 호 공고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에 속하지 않은 6 가지 유형의 경우(“포지티브 리스트”)를 명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중 무상 용역 제공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유형의 수익은 모두 경영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식을 활용해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포지티브 리스트 중 비과세거래 수익은 산식의 분모에만 포함됩니다.

### 1.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PwC 의 관찰:** 보험금 지급은 본질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일 뿐, 피보험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수령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제품책임보험, 소송재산보전책임보험 등 제 3 자 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지만,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쪽은 손해를 입은 제 3 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으나, 성질상 경영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제불가 비과세거래로 처리할지 여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 2. 화폐성 자산 또는 비화폐성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PwC 의 관찰:** 납세인이 증여를 받는 행위는 경영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 증여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 운송비·설치비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 3. 계약 미이행 및 과세 거래 미발생으로 인해 위약금 등 수익을 취득하는 경우

**PwC의 관찰:**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위약금은 “계약 미이행”과 “과세거래 미발생”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과세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 이 시점에는 경영활동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받은 위약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예: 변호사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계약을 이행한 후 혹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위약금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지급기한 연장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대가로 보아 판매액에 산입하며,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제품 품질,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 문제로 인해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위약금은 성격 및 계약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4. 무상 용역 제공의 경우(금융상품 무상 양도 제외)

**PwC의 관찰:** 무상 용역 제공은 “경제적 이익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무상 양도는 과세거래로 간주되는 범위에 속하므로 해당 조항은 이를 제외합니다.

### 5. 자신의 과세거래 발생으로 취득한 관련 매출채권 등 채권(유가증권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PwC의 관찰:** 유가증권 양도는 금융상품 양도에 해당하며 과세거래이므로 본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채권은 반드시 “자신의 과세거래 발생으로 취득한 관련” 채권이어야 하며, 즉 채권의 “1차 양도”에 한합니다. 해당 유형의 채권은 과세거래라는 기반이 존재하며, 양도 목적은 통상 자금의 신속한 회수에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2차 양도”, 예컨대 금융팩토링 기관이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6.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수익 또는 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재정 보조금

**PwC의 관찰:**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수익 또는 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조금은 증치세 판매액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5 호 공고는 수익 또는 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재정 보조금을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재정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二) 네거티브 리스트: 4 가지 유형의 공제불가 비과세거래

네거티브 리스트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에 속하는 4 가지 유형의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해당 4 가지 유형의 거래 수익은 모두 경영활동으로 취득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산식을 활용해 구분할 수 없는 공제불가 매입세액 또는 장기자산 혼합 사용 기간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유형의 수익은 산식의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가 증치세법 제 4 조에 열거된 경내 발생 과세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PwC의 관찰:** 《증치세법》 제 4 조는 “경내 발생 과세거래”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 1) 재화 판매: 재화의 발송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에 있는 경우.
- 2)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 자연자원 사용권 양도: 부동산, 자연자원 소재지가 경내에 있는 경우.
- 3) 금융상품 판매: 금융상품이 경내에서 발행되거나, 판매자가 경내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 4) 본 조항 제 2 호, 제 3 호 규정을 제외한 용역, 무형자산 판매: 용역과 무형자산이 경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경내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주로 경내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치세법》 제 4 조 제 3 호와 제 4 호의 경우 판매자가 경내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경내 과세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리스트

1 은 주로 제 1 호와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화 판매의 경우, 재화의 출발지와 소재지가 모두 경외에 있는 중계무역, 또는 경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판매, 경외 자연자원 사용권의 양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거래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로 분류됩니다.

## 2. 유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유가증권 제외)

**PwC 의 관찰:** 유가증권(예: 상장회사 주식) 양도는 금융상품 양도에 해당하며 자체가 과세거래이므로 본 조항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 전에는 지분양도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가 논쟁이 많았는데 현재 25 호 공고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지분 양도는 공제불가 비과세거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 과정에 발생한 중개수수료, 변호사비용, 평가비용, 감사비용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3. 지분 보유(유가증권 제외)로 취득한 배당금, 그리고 주식회사 보통주 보유(유가증권 포함)로 취득한 배당금

**PwC 의 관찰:** 지분 양도와 유사하게, 이전에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25 호 공고는 지분을 보유하든 주식을 보유하든 취득한 배당금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예: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이번 규정이 보통주 배당을 특별히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켰을 뿐 우선주 배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주 배당이 원금 보장 성격을 지닌다면 이는 증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반면 원금 보장 성격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여전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 4. 상품 선물 거래(실물 인수도 단계 제외)

**PwC 의 관찰:** 실물 인수도가 수반되지 않는 선물 투기 및 매매 청산 행위는 비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영활동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품 선물 거래 중 실물 인수도 단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본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二、기타 요점 개요

### (一) 자산 재편 시 금융상품 매입가액의 확정

신규 규정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재편의 경우, 양수자가 향후 해당 금융상품을 양도할 때 매입가는 기존 양도자의 역사적 매입가를 그대로 승계하며, 재편의 비과세 처리로 인해 가격이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치세 차액 과세 체계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과세기반의 유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양수자는 자산 재편 시점에 기존 양도자의 매입가 관련 자료와 인수도 서류 등을 확보하여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역사적 매입가의 진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二) 증치세 혜택 포기 규정

기존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정책하에서는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혜택을 포기할 것을 선택할 경우 서면 포기 선언서를 제출해야 했고, 비안 자료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5 호 공고에 따르면, 납세인은 포기 선언서에 혜택 포기의 시작 시점을 직접 명시한 후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단 포기하면 36 개월 이내에는 다시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25 호 공고는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8 월 31 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처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공제불가 비과세거래 관련 매입세액이 25 호

공고 시행 전에 이미 공제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전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납세인은 주관 세무기관과 사전에 합법적인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5 호 공고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신규 증치세법 시행 이후 납세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비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산 재편과 혜택 포기 등 분야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신규 정책은 투자, 재편, 보조금, 위약금, 보험금, 무상 거래 등 고빈도 업무의 세무 처리를 전면적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속히 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사 업무를 점검하고, 특히 지분 양도, 배당소득, 경외 거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처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구분한 뒤, 적시에 내부 기준을 조정하고 주관 세무기관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규정의 틀 안에서 공제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것을 권고드립니다.

## 주석

1. 《비과세거래 등 증치세 관련 사항 명확화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6 년 제 2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2024/content.html>
2.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3.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12/content\\_7053149.htm](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12/content_7053149.htm)
4.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6]13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94/content.html>

##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mailto: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mailto: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mailto: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mailto: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mailto: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mailto: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mailto: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mailto: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 新知

##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9 月 8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